
노인인권보호지침

- 수급자(보호자) 제공용 -

은혜의집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학대 정의

○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복지시설의 역할과 의무

시설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개입협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의뢰시 신속한 보호조치,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시설 내 학대발생 현황 및 조치결과 보고 등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

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학대 유형

노인학대의 유형(노인복지법 제1조의2와 제39조의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
에 대한 금지행위)

학대유형	내용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신체적 학대



폭행, 신체를 강제적으로 억압,
물리적인 힘에 의한 위협

정서적 학대



욕설, 고의적인 따돌림, 무시

경제적 학대



노인의 재산을 허락없이
사용하거나 갈취

성적 학대



성폭력, 성희롱

방임 및 자기방임



의식주, 경제적 및 의료적 보호를
제공하지 않고 방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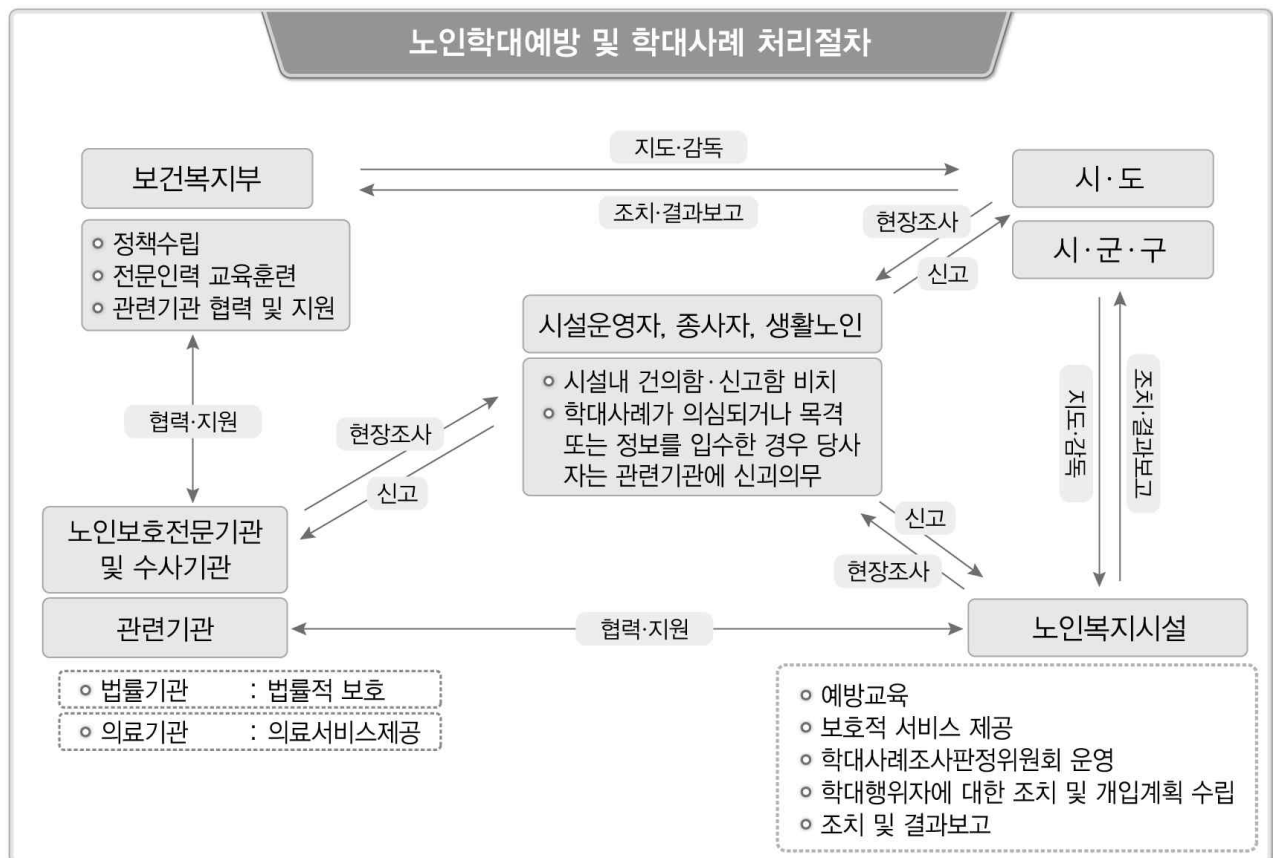
유 기



의존적인 노인을 유기

● 노인학대 예방

- ① 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 ② 시설은 시설 내에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를 공시하여 노인과 종사자 모두가 학대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갖출 수 있게 하여야 한다.
- ③ 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노인들에게 인권교육자료를 보급하고, 노인 인권 및 학대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④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노인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⑤ 종사자는 노인들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⑥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 ⑦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⑧ 종사자는 노인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 ⑨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노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⑩ 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노인학대 대응방법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의료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이며, 노인복지법 제61조의 2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시설의 역할과 의무

- 시설 내 노인학대 의심사례 및 학대사례 발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
- 시설이용자 중 학대피해노인 및 학대행위자에 대한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상담 및 개입 협조
-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에 대한 입소 의뢰 시 신속한 보호 실시
- 시설 내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실시



포스터는 노인학대 신고와 대응 방법을 안내하는 내용입니다. 상단에는 보건복지부와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로고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중앙에는 '어르신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가 크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단에는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과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노인보호전문기관

어르신 행복을 지켜드리는 번호,
기억해주세요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9
또는 **129**

노인학대 7대 예방수칙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알린다.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다름, 욕설 등의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상태이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합니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